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신설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2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근거 규정 신설 등	2
2. 소방장비 등의 국내외 인증 및 해외진출관련 시책 마련 등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 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 14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근거 규정 신설 등

개정안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신설하고 기존에 소방산업의 진흥·발전 지원을 담당하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장비의 기술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며,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신설과 관련하여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소방청장의 경비출연·지원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중 신설되는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제14조의 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u>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u>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u>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u>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 <u>소방용품·장비의 기술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위험물의 안전관리를</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삭제>

현행	개정안
<u>조사·연구</u> 2. <u>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 지원</u> 3. <u>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u> 4. <u>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u> 5. <u>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u> 6. <u>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u> 7. <u>소방장비</u> 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u>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u> 9. ~ 12. (생략) ④·⑤ (생략) <u><신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7. <u>소방용품·장비</u> ----- ----- ----- <u><삭제></u> 9. ~ 1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u>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u>) ① <u>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u> ② <u>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u> ③ <u>공단은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u>

현행	개정안
	<u>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④ 공단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u> <u>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u> <u>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 지원</u> <u>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u> <u>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u> <u>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u> <u>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u> <u>7.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u> <u>8. 그 밖에 진흥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u> <u>9.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u> <u>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u> <u>하는 사업</u> <u>10. 그 밖에 진흥공단의 설립 목</u> <u>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u> <u>⑥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u> <u>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u> <u>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u> <u>준용한다.</u> <u>⑦ 소방청장은 진흥공단의 시설</u> <u>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u> <u>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u> <u>있다.</u> <u>제14조의4(진흥공단에 대한 감독</u> <u>등) ① 진흥공단은 사업계획 및</u> <u>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u> <u>을 받아야 한다.</u> <u>② 소방청장은 진흥공단의 업무</u> <u>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u> <u>감독한다.</u> <u>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진흥</u> <u>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u> <u>사업</u> <u>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u> <u>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u> <u>한 사항</u> <u>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u>

현행	개정안
	<u>사항</u>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공단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 신설에 따른 사무 및 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원의 사업 중 이 법 제14조의3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원 소속 직원 중 이 법 제14조의3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현행법 제14조는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의 설립 및 소관 사무

를 규정하고 있음.

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1992년 한국소방검정공사로 출범한 이후 2008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¹⁾에 따라 명칭을 기술원으로 변경하였고,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소방장비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술원의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검사, 소방장비 품질검사, 소방시설 관련 조사·연구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소방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을 설립하려는 것임.

현행 기술원의 사무를 개정안의 조직 분리 내용에 따라 소방장비 등 품질인증·기술개발 업무와 소방산업 육성·진흥 업무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이 분류됨.

1) 법률 제9094호, 2008.6.5. 제정, 2008.12.6. 시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업무 분리(개정안)>

현행 기술원 업무 중 품질인증·기술개발 업무	현행 기술원 업무 중 소방산업 육성·진흥 업무 (신설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의 업무)
1. 소방장비(→“소방용품·장비”로 변경)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2.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4.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등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8.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등

기술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2센터 2실 13부 1소, 27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기획·행정 관련 3개 부를 제외한 사업부문 조직을 개정안의 조직 분리 내용에 따라 나누어 보면 품질인증기술개발 부문에 시험인증부 등 8개부, 193명이 근무하는 반면, 소방산업 육성진흥 부문에는 산업진흥부 및 국제협력부 2개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2024년도 사업예산 규모도 총 306억 1,600만원 중 품질인증·기술개발

부문이 81억 7,100만원(전체 예산의 26.7 %), 소방산업 육성진흥 부문이 31억 1,700만원(전체 예산의 10.2 %)으로, 기술원의 운영이 인증·시험 업무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²⁾.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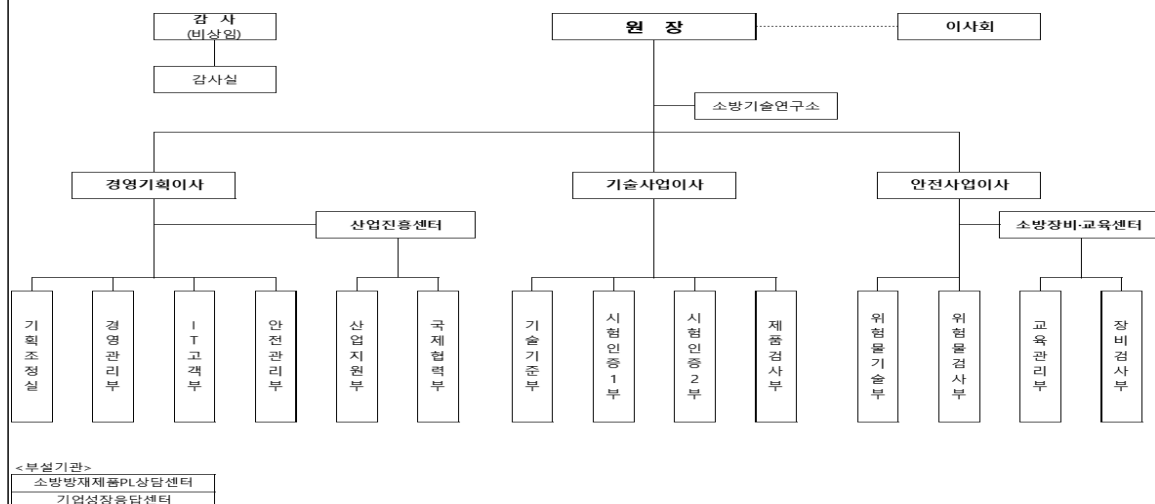
□ 설립목적

- 소방산업 진흥·발전 지원 및 소방산업기반 조성, 소방제품과 위험물 시설의 안전성·품질 확보로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 주요업무

- 소방용품 안전관리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등)
-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위험물저장탱크 검사,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 등)
- 소방장비 안전관리 (소방장비 검사·정밀점검, 사용자교육 등)
- 소방산업진흥업무 (정책·제도 조사연구,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R&D 등)

□ 기구: 2센터 2실 13부 1소



2) 상세 내용은 [참고 1] 참조

□ **정원: 279명**(현원: 279명)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8급
정원	279	4	3	13	30	75	71	83
현원	279	4	2	14	30	72	75	82

□ **2024년 예산규모: 700억 원**

(단위: 백만 원)

수입 예산		지출 예산	
□ 주요사업 수입	49,968(71.3%)	□ 사 업 비	30,616(43.7%)
□ 사 업 외 수 입(예치금 등)	18,123(25.9%)	□ 일 반 관 리 비	9,942(14.2%)
□ 기 타 수 입(용역 위탁)	1,989(2.8%)	□ 인 건 비	28,032(40.0%)
		□ 예 비 비	1,490(2.1%)

(자료 : 소방청)

개정안은 새로운 특수법인으로서 진흥공단을 신설하여 현재 기술원에서 미흡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소방산업 진흥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소방산업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으로서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며, 현재 국내 소방산업 기업체의 90.8%가 매출액 50억 미만의 중소기업인 점³⁾과 소방 분야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시장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소방산업의 진흥을 중장기적으로 기획·관리·지원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해 보임.

3)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다만, 개정안은 신설 법인으로서의 진흥공단을 설치하면서도 그 업무를 현행 기술원의 사업에서 분리하여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흥공단을 신설하더라도 사업 재원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소방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기존 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재정·인력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현 정부 정책기조인 “공공부문 효율화” 방침⁴⁾과도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진흥공단의 신설 보다는 기존 기술원의 업무 재조정을 통해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소방청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소방 기술 혁신, 소방산업 전문 인재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국제 협력기반 및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개정안과 같이 “진흥공단”의 신설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신설 최소화 방침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5.

국정과제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효율화)

- 기능점검을 통해 민간경합, 유사·중복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

2 소방장비 등의 국내외 인증 및 해외진출관련 시책 마련 등

개정안은 소방청이 소방장비 등의 국내외 신속 인증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기술 표준 관련 국제표준기구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소방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상담·자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1항3호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① ~ ④ (생략) <u><신설></u>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소방 장비, 용품 등의 기술 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신설></u>	⑥ 소방청은 소방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산업체들이 해외 인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

현행	개정안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u>	3. <u>소방산업체의 해외진출에--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소방청장은 국내 소방산업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

현행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제3조)5), 소방기술·소방장비의 개발, 보급,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6),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비용보조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7).

개정안은 소방청장에게 새로 개발한 소방장비 등의 국내외 성능 인증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소방산업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법의 각 조문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개정안의 내용 및 관련 현행법 조문>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 관련 현행법 내용
-소방산업체 등이 개발한 소방장비 등의 신속인증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9조제5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 규정(제3조 제1항)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제4조제2항제6호 및 제5조)
-소방기술 표준관련 국제표준기구·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강화(안 제9조제6항 전단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외국·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책무 규정(제3조제2항) -소방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제4조제2항제7호 및 제5조)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인증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9조제6항 후단 신설)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지원(제20조제1항제4호)
-소방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상담·자문 및 교육 등 지원(안 제20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해외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 정보제

조제1항제3호)	공, 해외시장 개척 지원, 그 밖에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국내 소방산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20조제3항 신설)	-소방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제4조제2항제7호 및 제5조)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의 소방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비용지원 등(제20조제1항 및 제2항)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 육성진흥 부문과 품질인증기술개발 부문 비교

1 소방산업 육성진흥 부문

① (개요) 소방산업 기반조성, 해외경쟁력 강화 등 소방산업진흥 및 소방안전 신기술 개발 등 특허지원 사업(위탁사업 자체예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확보, 산업체 해외진출 지원, 소방산업 빅데이터 관리·유통, 소방산업 성장인프라 구축 업무

② (조직/업무)

□ 산업진흥센터

○ 산업지원부

- 소방 혁신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통계·수요조사 활용 소방산업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
- 소방산업 관련 제조업체 실무자 워크숍 및 간담회 등

○ 국제협력부

- 국내 소방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소방시장 정보 지원
- 해외 소방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
- 수출입 동향 등 해외소방시장 정보 지원
- 해외 소방유관기관과 국제교류 및 기술협력 강화 등

③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산업진흥센터	
		산업지원부	국제협력부
정원	15	10	5

④ (2024년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계획명	사업비
산업진흥센터	산업지원부	· 혁신기술 중심 사업화지원 확대	1,524
	국제협력부	· 소방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1,593
합 계			3,117

2 품질인증기술개발 부문

① (개요) 국민의 소방안전과 밀접한 소방용품 및 소방장비, 위험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사업(위탁사업, 자체예산)

② (조직/업무)

- 시험인증 1·2부: 소방용품 시험 및 인증
- 제품검사부: 소방용품 제품검사 및 성능검사
- 기술기준부: 소방 기술기준·소방관계 법령 제도 개선, 소방용품 인증취소 관리 등
- 소방기술연구소: 기술기준 고도화 및 실용화 공동개발연구사업 수행
- 위험물기술부: 위험물기술기준 선진화 및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위험물검사부: 위험물시설 점검 및 검사
- 장비검사부: 소방장비 검인증 및 정밀점검·성능평가

③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시험인증 1부	시험인증 2부	제품검사부	기술기준부	소방기술 연구소	위험물 기술부	위험물 검사부	장비검사부
정원	193	30	21	48	19	13	10	30	22

④ (2024년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비
시험인증1부/ 시험인증2부	· 소방용품 시험·인증 시스템 강화	2,094
	· 국민 공감형 안전서비스 확대	
제품검사부	· 고품질 소방용품 보급 확대	1,940
	· 고객 맞춤형 검사서비스 확대	
기술기준부	· 체감형 기준 혁신으로 소방용품 품질기반 강화	363
	· 소방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기반 구축	
소방기술연구소	· 소방기술기준 고도화 연구 강화	1,194
	· 소방용품 실용화 연구개발 활성화	
위험물기술부	·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및 전문역량 강화	412
	· 위험물질 화학사고 예방 강화	
위험물검사부	· 위험물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1,198
	· 위험물 안전서비스 제공 및 기술역량 강화	
장비검사부	· 소방장비 검인증 관리 강화	970
	· 현장 소방차량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	
합 계		8,171

참고 2 국내 소방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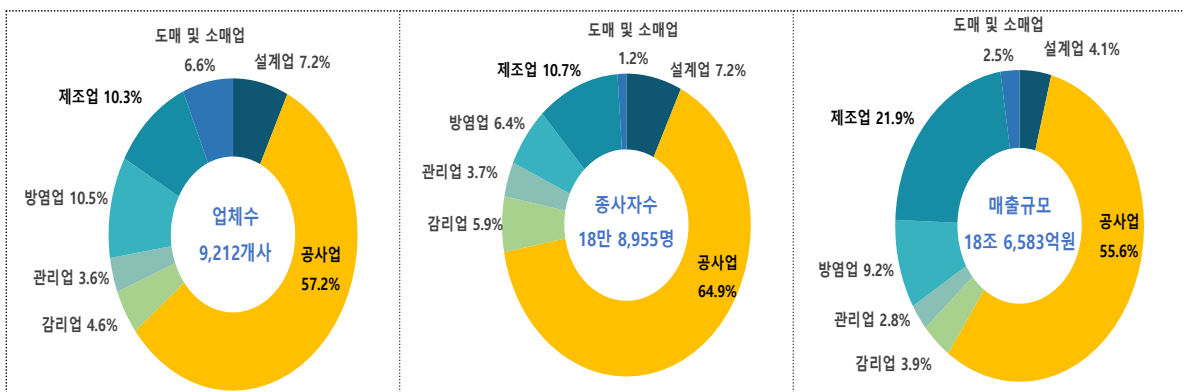
※자료 : 소방청

□ 국내 소방산업

- 국내 소방산업체는 7개 업종 총 **9,212개** 업체에 약 **18만 8천 명**이 종사하며, 매출액은 **18조 6천억원** 규모

구 분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	제조업	도소매업
업체수	9,212	667	5,267	427	963	334	950
종사자수	188,955	13,606	122,710	11,176	12,062	7,047	2,179
연매출액(억원)	186,583	7,641	103,812	7,288	17,139	5,169	4,602

- 업종별로는 **공사업**이 연매출액은 10조 3,812억원(55.6%), 종사자 수가 12만 2,710명(64.9%)로 제조업보다 **공사업**이 시장 주도적 역할



- 또한, 국내 소방산업체의 경우 90.8%가 전체 매출액에 「50억 원 미만」인 전반적인 기업당 매출액이 낮고 영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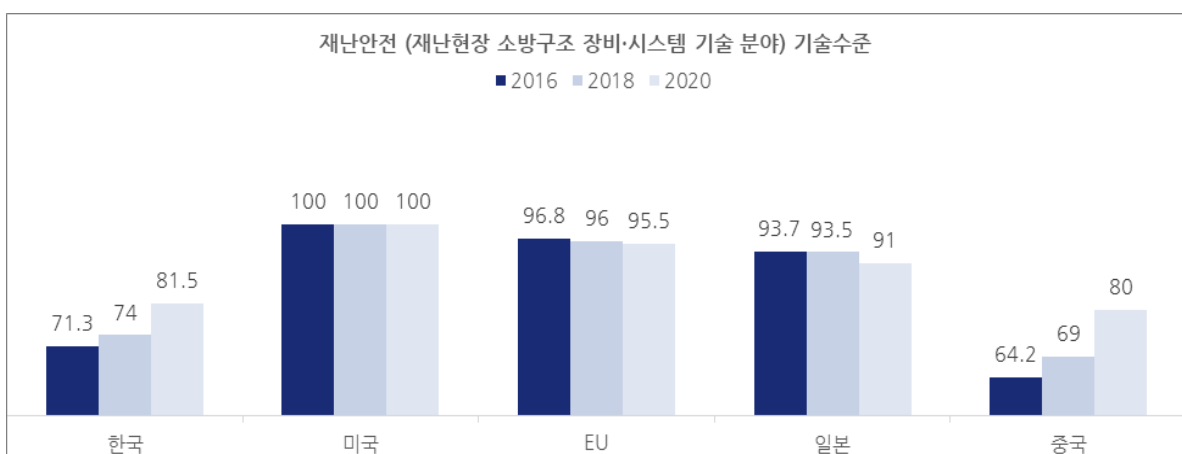
(단위 : %, 억 원)

구분	소방산업 관련 매출액 규모						소방산업 관련 매출액 총액
	합계	5억 미만	5억~ 10억 미만	10억~ 50억 미만	50억~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전 체]	100.0	35.0	21.3	34.5	6.0	3.3	186,583
소 방 설 계 업	100.0	53.1	16.6	26.1	3.9	0.4	7,641
소 방 공 사 업	100.0	29.1	22.1	39.6	6.4	2.8	103,812
소 방 감 리 업	100.0	40.4	16.4	34.6	7.3	1.2	7,288
소 방 관 리 업	100.0	21.3	30.6	45.4	2.2	0.6	5,169
방 염 업	100.0	60.0	13.4	18.2	3.6	4.9	17,139
소 방 제 조 업	100.0	24.3	18.8	34.7	11.6	10.6	40,931
소방 도매 및 소매업	100.0	48.3	33.0	17.9	0.8	0.0	4,602

* 출처 : 2023년 소방산업 통계조사(2024. 2. 28.)

- 소방산업 기술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70~80%정도로 낮은 기술 수준, 가격 경쟁력에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

<국내외 재난안전부문 기술수준>



* 출처 : 2020년 기술수준평가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3. 11.)

<해외 진출 형태>

(단위 : %)

구분	해외 진출 경험		해외 진출 형태*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해외 지사(공장) 설립	해외업체와 직거래	해외 협력업체 연계	기타
[전 체]	98.4	1.6	11.2	81.9	6.4	0.5

* 출처 : 2023년 소방산업 통계조사(2024. 2. 28.)

- 소방용품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비용 등의 문제로 98.9%가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국제 경쟁력이 낮아 대부분 내수 시장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음

<해외 인증 취득 시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취득 여부			해외 인증 취득 시 애로사항(1순위)						
	합계	있음	없음	합계	비용	인증기간	인증기준불분명	행정절차	언어장벽	기타
[전 체]	100.0	1.1	97.7	100.0	48.1	22.5	9.7	13.5	6.1	0.1
방 엄 업	100.0	0.2	99.8	100.0	55.6	17.5	9.7	13.8	3.3	0.0
소방제조업	100.0	1.9	98.1	100.0	42.5	26.1	9.7	13.3	8.2	0.3

* 출처 : 2023년 소방산업 통계조사(2024.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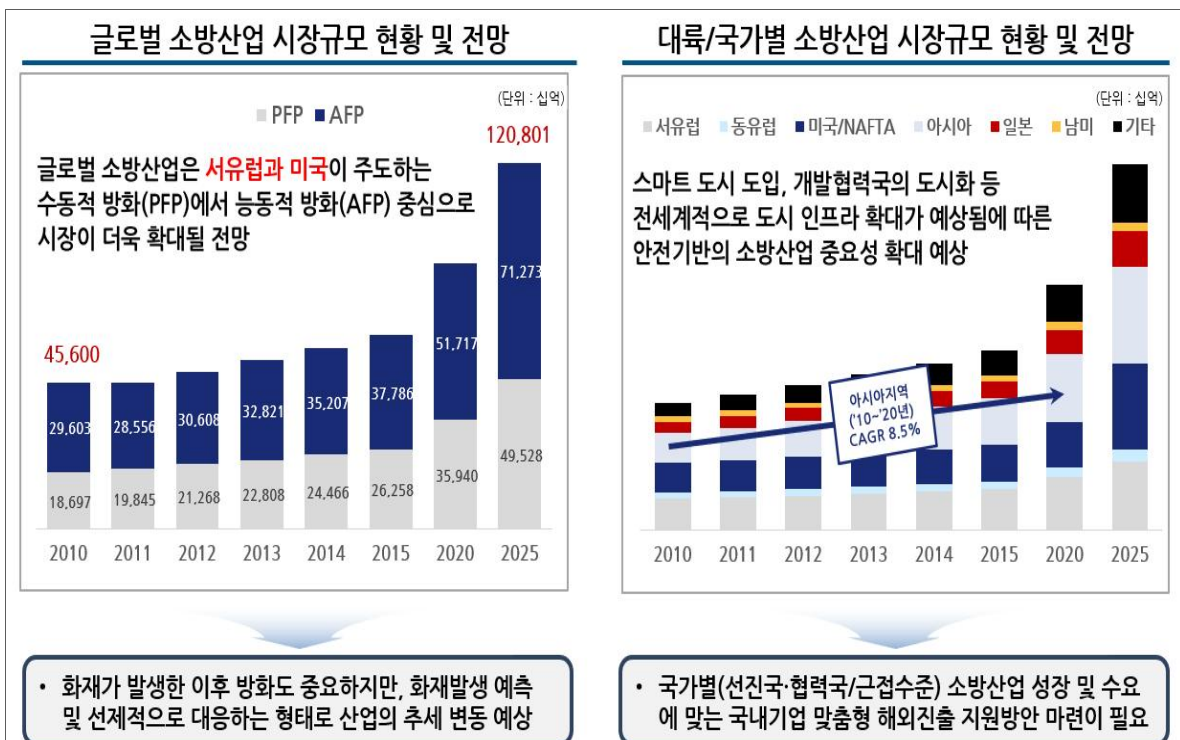
참고 3

해외 소방산업 현황

※자료 : 소방청

□ 해외 소방산업

- AFP(Active Fire Protection, 능동적 방화)중심의 글로벌 소방산업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스마트 도시 도입 및 개발협력국의 도시화 등 소방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해외 소방산업 현황>

- * AFP : 능동적 방화(Active Fire Protection)
- ** PFP : 수동적 방화(Passive Fire Protection)
- *** 자료출처 : Fire Protection Industry Worldwide Innovation and Brand-building Strategy 2015-2025, Helmut Kaiser Consultancy, 2012

□ 해외 소방산업 정책 사례 분석

- 미국의 경우 FEMA 등의 계획을 통해 소방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각 분야별 공업협회)과 영국(FIA, FPA 등 협회)의 경우 민간주도로 진흥업무를 수행

 미 국	 영 국	 일 본
• 미국은 연방대응계획(FRP), 연방재난관리청(FEMA) 전략 계획 등을 통해 소방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연방대응계획: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 지역에 연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연방지원의 형태를 12가지 긴급지원기능으로 분류 • 연방재난관리청: 소방관련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한국의 소방청과 같은 역할을 수행 • 미국의 주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많은 재원을 경찰, 소방 등에 투입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지방정부 예산의 약 11% 정도임 • 주로 화재 관련 특정 기금이나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지방세 및 다양한 수수료나 부담금 등을 소방재원으로 부과 • 해외 수출지원 업무는 미국 상무부 산하 무역관리청이 수행하며, 각 국가에 대한 분야별 정보 제공 중	• 영국소방산업협회(FIA),화재보호협회(FPA), 영국소방협회(UK-FA) 등 민간 주도로 진흥업무를 수행 중이며 • 특히 FIA에서는 자체 Third Party 인증(기술, 품질 검증)을 운영하고 있음 • FIA에서는 업종별 위원회(제조, 시설, 소방관리 등)를 두어 정부와의 협의를 수행하며, 수출심의 위원회에서 수출촉진 업무를 담당 • 소방사무는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영국정부는 감독권만 행사함 • 더불어, 방재업무는 내각부 산하 CCS, 소방은 사회지방정부 산하 소방화재복구국에서 수행함 • 대부분의 진흥업무를 민간(협회)주도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 중앙 정부 보조금과 지방의회 세금을 통해 소방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소방청을 중심으로 소방정책관리체계 구축 • 일본 소방청내 소방연구센터에서 R&D 지원, Open innovation 연구개발센터 사업 운영 • 일본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시 지방정부-국가간 조정역할과 재난대응 지휘명령을 수행함 •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중심의 소방행정체제로서 소방행정의 일차적이고도 직접적인 책임은 시·정·촌에 부여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에 의존하고, 정부차원의 국가지원은 미비한 수준임 • 소방청의 재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각 기구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 자료출처 : 지방세 소방재원조달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소방산업진흥기금 조성·운영연구용역, 한국행정개혁학회, 2020.